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20 호 2021. 12. 9.(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8호[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9호[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88호[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1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89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3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88호[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고시]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90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3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525호[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2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564호[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2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565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2호선)사업] 2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572호[공시송달 공고] 27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응권 (인)

2021년 12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분과를 둘 수 있으며, 실무분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청년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의 실무분과 구성과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청년정책협의체 실무분과 구성과 업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활동비의 지원(제12조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인)

2021년 12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9호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
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 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 나.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 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원경찰

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 (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매년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2. 제1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

② 구청장은 악성민원이 빈발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
8.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 내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내요원 배치

5.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실에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대에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당해 연도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10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민원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가해 민원인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기준(제9조제1항 관련)

지원 구분	근거	지원 한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7조제1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	제7조제2호	예산의 범위	1. 병원진료비, 입원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7조제3호	4시간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 및 소송 등	제7조제4호		법률상담 서비스연계 등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7조제5호	5일 이내	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제7조제6호	5일 이내	관련 조례 및 부서장 재량범위
그 밖의 사항	제7조제8호	예산의 범위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	제8조	예산의 범위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3조~제5조)
- 다. 신고의무, 지원 사항,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제6조~제8조)
-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불이익 조치 금지 등(제9조~제13조)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12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운영지침은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이 수립한다.

③ 실무분과의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분과 연간 운영계획서 및 업무추진 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제3조)
- 나. 실무분과 구성, 운영지침 수립, 업무 추진 실적 제출 등 관한 사항 신설(제8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12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89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
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
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
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의5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을 “(차량총괄부서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

은 집중관리부서는”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집중관리부서”를 “총괄관리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중관리부서는 당해”를 “제2차 관리부서는 배정받은”으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를 “차량관리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차량 집중관리부서”를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을 “특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집중관리부서”를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차량 집중관리부서”를 “차량총괄부서”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 ① 공용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 제한 속도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해당차량의 운전원 책임으로 한다.

②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제26조의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① 제26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비율 준수를 위한 차량기준 정수 등을 정비하고 총괄부서 관리 방법 및 운전자 과실에 의한 책임 조항 등을 마련하여 공용차량 관리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차량기준 정수 등을 관련법령 및 현실에 맞도록 조정(제10조)
- 나. 총괄부서 및 제2차 관리부서 지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제16조~제17조)
- 다. 부서별 업무용 차량공유 및 통합운영을 위한 배차승인 권한 정비(제18조)
- 라. 운전자 과실에 의한 책임 조항 명시(제27조의2~제27조의3)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88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고시기간 : 2021. 12. 6.(월) ~ 12. 27.(월) (22일)
2. 고시내용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3. 목 적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함께 협력해 나가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한 고시 절차 이행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54조(행정협의회의 규약)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5. 문 의 : 울산광역시 복구청 가족정책과 아동친화드림(052-241-7675)

붙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1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5.09.14. 제정
 2016.11.16. 개정
 2017.11.03. 개정
 2018.09.13. 개정
 2019.09.24. 개정
 2021.07.01. 개정
 2021.11.02. 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24.)

제2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 1.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 2.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 3.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 4.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협의회는“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된다.
 (개정 2019. 9.24.)

제4조[임원 및 조직]

- ①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1인, 사무총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11.16., 2021. 11. 2.)
- ②회장, 감사, 사무총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개정 2017.11.3., 2021. 11. 2.)
-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1.3.)
- ④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사무국을 설치한다. (개정 2017.11.3., 2019. 9.24., 2021. 7. 1.)

제5조[임원의 임기]

- ①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한다. 단 고문인 광역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3.)

- ②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 ① 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1.3.)
- ② 협의회 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3.)
-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협의회 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개정 2016.11.16.)
-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 ① 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3., 2019.9.24.)
- 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함은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 9.24.)
-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3.)
 1.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24.)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24.)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신설 2019. 9.24.)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신설 2019. 9.24.)
 8. 사무국 별도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신설 2021. 7. 1.)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협의회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3.)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신설 2017.11.3.)

④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신설 2019. 9.24.)

④의2 ④ 사무국 별도 설치 시, 부담금 예산을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되, 지자체 세출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신설 2021. 7. 1.)

제14조[규약개정]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제17조[사무국] (신설 2021. 7. 1.)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파견공무원의 임금 및 제수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내부 운영방안(방침)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국의 업무] (신설 2021. 7. 1.)

① 총회, 실무진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②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 회계

③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④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사업 제안 및 추진

⑤ 기타 총회 및 실무진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 유니세프 이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개정 2021.11.2.)

지역	지자체명
서울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남구
부산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하구, 서구, 진구, 북구, 남구
인천 (3)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광주 (4)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북구
대구 (1)	달서구
대전 (3)	유성구, 대덕구, 서구
울산 (1)	북구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7)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충남 (8)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부여군,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
경기 (16)	수원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성남시, 군포시, 의왕시, 광주시, 과천시, 하남시
강원 (4)	횡성군,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전북 (4)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남 (6)	광양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나주시, 고흥군
경북 (5)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칠곡군, 김천시
경남 (3)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9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산업로 1627	중산동 808-9	2021. 12. 9.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12.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525호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

도로의 종류	구도	노선명	중2-43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 차량 (도로보수용 공사차량 제외)	구간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757-13번지~ 711-1번지
기간	2021년 12월 4일부터 보수공사 완료 시까지		
이유	- 효문2교 교량 접속부 보수공사		
그 밖의 사항: 첨부서류 참조			
첨부서류: 통제구간 위치도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564호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

도로의 종류	구도	노선명	2-7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 차량 (도로·하천복구용 공사차량 제외)	구간	울산광역시 복구 어물동 1240-95번지~ 571-2번지
기간	2021년 12월 8일부터 복구공사 완료 시까지		

이유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로 인해 붕괴된 도로 및 제방 복구공사

그 밖의 사항: 첨부서류 참조

첨부서류: 통제구간 위치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56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2호선)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2호선) 사업의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2호선) 사업(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 사업예정지: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263번지 일원
- 사업내용: 도로개설 L=360m, B=10m
- 사업기간: 2021. 1. 14. ~ 2022. 12. 31.
-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북구청 건설과
- 열람기간: 2021. 12. 9. ~ 2021. 12. 24.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1. 12. 9. ~ 2021. 12. 24.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건설과 (☎052-241-7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572호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연암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12. 9. ~ 2021. 12. 23.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복구 연암동	152-2번지	미상	미상	불법경작	200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1. 12. 23일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